

ISSUE 01

깨끗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일터,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노동자의 현실과 사회적 인식

일할 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건물을 오르내릴 때, 도로를 걸을 때, 이 모든 환경의 청결 상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 당연한 청결함이 바로 청소노동자의 땀과 노고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곤 한다.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동환경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수준을 넓히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써본다.

청소노동자는 이른 새벽 거리에서 만나는 환경미화원,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원, 건물청소원 등이며 우리 사회 곳곳의 위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 '필수노동자'로 불린다. 그럼에도 이러한 호칭과 달리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녹록지 않고, 육체노동에 대한 경시 풍조와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 존중의 결여 등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노동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노동권 사각지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짚어본다면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수준,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 신체부담작업, 야간·새벽 근무, 부적절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휴게시설 등이 있다. 청소노동자는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돼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1년 단위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은평구 미화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에서는 1년 미만의 계약비중이 29.4%로 나타나는 등 단기 계약 비중이 높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용불안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미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팀장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신규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업무 동기부여가 어렵고 직무만족도 역시 낮다.

같은 사업장에서 수년간 일해도 용역업체가 1년 미만 계약으로 바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청소노동자가 접하게 되는 유해인자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고, 건물청소원은 소독제·세척제 등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반복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흔하며, 하루 2만 보 이상 이동하는 업무 특성상 족저근막염 등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많다.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청소노동자가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노동'이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시민, 주민, 건물 이용객이나 입주자 등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긴다. 이처럼 문제점이 누적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청소노동자가 원인을 쉽게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비노동자는 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 속에서 일한다. 식사 도중에도 주민 호출이 있으면 즉시 뛰어나가야 하고,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약자성은 청소노동자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29.4%

은행구 미화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감정노동이 겹치는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일하지만, 부당함을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더구나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는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감정적 상처를 받더라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노동약자’, ‘취약계층노동자’, 최근에는 ‘권리 밖 노동자’라고 부른다. 청소노동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 산재상담, 권리구제, 교육,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청소노동자가 이 기관들에 닿는 일은 쉽지 않다. 고령의 노동자는 모바일·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온라인 기반으로 홍보되는 노동지원단체·기관 정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도움이 가장 절실한 노동자가 가장 먼저 지원에 닿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사회적 변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소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외부 노동지원단체·기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많은 청소노동자는 실업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더는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노동상담이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일수록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청소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촘촘한 홍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임금·복리후생 개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청소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물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협의체와 같은 이해대변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노동자가 가장 바라는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고용을 도입한 기관이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유인책 마련도 요구된다. 아울러 용역계약에는 고용승계 조항을 의무화하고, 재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청소노동자가 양질의 휴게공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교육과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보급, 적절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청소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와 교육, 캠페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청소노동에 대한 존중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나이에 청소한다고 쉽게 말을 못해요. 깔보거든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은 이 나이에 또 일할 수 있다고 저를 부러워해요.” 70세 청소노동자의 말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래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공존한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간다. 어떤 일이든 가벼운 일은 없다.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청소노동자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는 청소노동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화,
임금·복리후생 개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